제246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개최일시 : 2016. 2. 26.(금) 10:00

□ **심의안건 : 총 7건**(조례공포안 6, 규칙안 1)

□ 심의결과 : 원안가결 7건

연번	의안 번호	제출부서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1	10	자 치 행 정 과 (기획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원안가결
2	11	기 획 예 산 과 (공영목 의원발의)	서 <mark>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mark> 례공포안	원안가결
3	12	기 획 예 산 과 (정관훈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원안가결
4	13	기 획 예 산 과 (고양석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원안가결
5	14	기 획 예 산 과 (김영 <mark>옥</mark>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원안가결
6	15	기 획 예 산 과 (오현정 의원발의)		원안가결
7	16	기 획 예 산 과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 결 서

- 1. 의안번호: 제10 ~ 16호
- 2. 의 안 명

가	거
	2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발 가 발 가 발 가 발 가

- 3. **제 출 자:** 행정관리국장 외 1
- 4. 의결주문: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건, 부결 건, 심의보류 건
- 5. 의결이유: 회의록 참조
- 6.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4조
 - 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부의장:

(행정관리국장)위원:

(기 획 경 제 국 장)위원:

(복지환경국장)위원:

(도 시 관 리 국 장)위원: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위원:

(보 건 소 장)위원:

위 정본입니다

2016. 2.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인

제246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최 및 의결일시 (금) 10:00 회의장소 부구청장실 참석위원 7인	의안번호	제10~16호	제출부서	자치행정과 외 1	제 출 자	행정관리국장 외 1
서욱특별시 광진구 대하적십자사 확동	및		회의장소	부구청장실	참석위원	7인
심의안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외 6건 의결내용 별지 참조	심의안건	l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외 6건 별지 :			별지 참조	

2016. 2. 26.

참석자 의 장 ※ 서명 생략 "의결서 참조" 부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회 의 록

□ 회의개최 개요

가. 일시: 2016. 2. 26.(금) 10:00

나. 장소: 부구청장실

다. 참석자: 조례규칙심의위원, 소관부서장 및 팀장

라. 배석자: 의회법무팀장

□ 진행 및 의결사항

0 서기

- 지금부터 제246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는 부의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조례공포안 6건, 규칙안 1건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동행정팀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11호부터 제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외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제안설명)

ㅇ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워전워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외 4건 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현재 상환중인 사람의 금리는 어떻게 하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 기존대로 적용하고, 신규 신청자부터 개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부의장

-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이라면, 기존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 행정관리국장

- 계약한 거라서, 그런 경우는 일시상환하고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ㅇ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이상으로 제246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의안번호	제10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기획행정위원회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 12. 30.자로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5.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제4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대한적십자사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대한적십자사 지원사업 범위 규정(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 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①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 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 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11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공영목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지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신설(안 제3조 제2항 2호 바목)
 - 신설: "바.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지정절 차를 신설(안 제3조 제3항)
 - 신설: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 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생략) 1. 가~나 (생략) 2. 가~마 (생략) < <u>〈신 설〉</u> 3. 가~라 (생략) < <u>〈신 설〉</u>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현행과 같음) 1. 가~나 (현행과 같음) 2.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판 에 속하는 사항 3. 가~라(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판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판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의안번호	제12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정관훈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 부장"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행정사무처리 등 의회운영의 효 율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법인의 신설(안 제2조 6호)

- 신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제2조(범위)
1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진
	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
	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



의안번호	제13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고양석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강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일부 순화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도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폐질등급' → '장애등급'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2010.1.1.)
- 나. 별지 제1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청구심의 결과) 서식 일부내용 개정(안 제6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8.7.)
 -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법」폐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2008.1.1.)
 -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 발신명의 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회 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 다. 목적규정에 있는 '용어의 약칭'을 다음 조항으로 이관(안 제1조 및 제2조)
-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 나. 입법예고: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로 한다.

제2조 1호 중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를 "'직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의장의 명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명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2호 중 "'의정활동비'라 함은"을 "'의정활동비'란"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한다.

제3조 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해당 연도"로 하고, 2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를 "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로 하며, 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4호 중 "규정에 의한" 및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 급' 1급"을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서식에 따라 의장"이라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결과에 의하여"로 한다.

제8조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로, 같은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광진구청"을 "구"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제6조2항의"를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를 "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생략)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1. ~ 3. (생략) 4. <u>기타</u>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생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 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 3.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 4. 제2호 또는 제3호의 <u>규정에 의한</u>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의원이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u>규정에</u>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생략)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제2호의 <u>"장애"라 함은</u>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u>제45조</u> 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 ②제4조제1항제3호의 <u>"상해"라 함은</u>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 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

- 1. (생략)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 정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3. 그 밖의
 4 <u>규정에 따라</u> -
 <u>규정에 따라</u>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u>"장애"란</u> <u>제45조에</u> 따른 "장애등급"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u>그 밖의</u>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에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광 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u>심의결과에 의거</u>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u>심의결과에 따라</u>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 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구좌</u> 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u>계좌</u> ② (생략)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상해</u> 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② (생략) 1. (생략) 2. <u>서울특별시광진구청</u> 소속공무원 중관련 국장 3. ~ 4.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u>통할한다</u> . ② (생략)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u>총괄한다</u> . ② (생략)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② (생략) ③심의회는 <u>제6조2항의</u> 청구서가 접 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 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u>서식에</u> <u>의거</u>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6조2항에 따른</u> <u>서식에 따라</u> 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u>서울특별시광진구</u> 소속공무 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u>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접 제 호 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접 제 호 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 의 원 <u>무민등록</u> 번 호	보상대상 성 명 의 원 생년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 전화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청구자 청구내용 다 사망 다 장애 다 상해	청구자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 령 금융가관 기점 번호	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 기점 번호
상병장소 일시	상병장소 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u>호적등본</u> 1부, 사망진단서 1부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시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시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u>제32조의2에</u>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u>제34조에</u>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접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처리기간	접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처리기간	
수	청구심의결과 즉 시	수 청구심의결과 통보서 즉 시	
보상대상 청구내용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보상대상 청구내용 성명 <u>생년월일</u>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시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시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결정>	<결정>	
심의회 심의결과	<결정이유>	심의회 심의결과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제13조제3항 <u>의 규정에 의거</u>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 <mark>에 따라</mark>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u>서</u>	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의안번호	제 14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김영옥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8.7.)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 및 상위법령의 제명(題名) 변경(2011.12.21.)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인관리 개선 도모

3. 주요내용

- 가. 명시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주소 변경(안 제1조)
 - : '사무관리규정 제41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11.12.21.)
- 나. 목적규정에 있는 '용어의 약칭'을 다음 조항으로 이관(안 제1조 및 제2조) 다.'의회청인'에 대한 상세내용 규정(안 제2조)
- 라. 공인대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10조 제1항)
 -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8.7.)
- 마.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 나. 입법예고: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로 하고, 같은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의회청인"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 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의회 의장
-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 3. 의회 사무국장

제2조 제3항 중 "명시된 이외의"를 "포함되지 않은"으로 하고, "비치할 수 있다"를 "갖추어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부터 5호까지"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구의회내에서"를 "의회 내에"로 한다.

제4조 조문 제목 중 "비치 및 관수자"를 "간수자"로 하고, 같은조 중 "의회의장, 의회사무국장"을 "청인, 의장 및 사무국장"으로, "비치하고"를 "두어"로, "관수하며"를 "간수하고,"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에 비치하고 각 위원장이 관수한다"를 "각 위원장이 간수한다"로 한다.

제6조 조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조 중 "신청서에 의거"를 "신청서에 따라"로, "교부하되"를 "발급하되"로 한다.

제7조 조문 제목 중 "날인의"를 "찍는"으로 하고, 같은조 중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를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로 한다.

제8조 조문 제목 중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하고, 같은조 중 "재교부를"을 "재등록을"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경우 또는 기타의"를 "경우와 그 밖의"로 하고, "서식에 의거이를 소각한 후"를 "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로 한다.

제9조 중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을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어"로 하고, "날인하고"를 "공인대장에 찍고"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을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부, 재교부"을 "등록, 재등록"으로 하고, "사용년월일"을 "사용연월일"로, "폐기년월일"을 "폐기 연월일"로 한다.

제12조 중 "공인관수자"를 "간수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 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u> 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행정업무의 효</u> <u>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u> <u>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u> 에서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u>의회</u> <u>청인과</u>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서울 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 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 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하는
 ② (생략) 1. 광진구의회 의장 2. 광진구의회 사무국장 3.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4.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5.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6. 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② (현행과 같음) 1. 의회 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u>명시된 이외의</u>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u>비치할수 있다.</u> ④ 제2항제3호부터 5호까지의 직인은 구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포함되지 않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의 직인은 의회 사무국에 비치하고 의정담당주사가 관수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u>각</u> 상임위원회 위원회에 비치하고 각 위원장이 관수한다.	제4조(공인의 <u>간수자</u>) <u>청인, 의장</u> <u>및 사무국장</u> <u>두어</u> <u>간수하고</u> <u>각 위원장이 간수한다.</u>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 2호 서식 <u>신청서에 의거</u> 사무국 장이 새겨 <u>교부하되</u> ,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 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u>발급</u> 및 등록) <u>신청서에 따라</u> <u>발급하되,</u>
제7조(<u>날인의</u> 위치) 공인은 기관 또 는 직위 명칭의 <u>끝자가 가운데 오</u> 도록 날인한다.	제7조(<u>찍는</u> 위치) <u>마지막 글자가 인영의</u>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를 소각한 후 사무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제9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u>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u> 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재료) <mark>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mark> <u>로</u>
제10조(공인대장) ① 별지 제1호 서 식의 공인대장을 <u>비치하여</u>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u>날인하고</u>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 ① <u>갖추어 두어</u> <u>공인대장에 찍고</u>

혀	행

- ② 공인대장은 <u>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u> 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공인을 <u>교부, 재교부</u>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 2. <u>교부, 재교부</u> 공인의 최초 <u>사용년</u> 월일 또는 페기공인의 페기년월일
- 3. <u>교부, 재교부</u> 또는 폐기공인의 공 인명 및 인영
- 4. (생략)

제12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u>공인관수자가</u> 공 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 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1] 공인의 규격

구 분	규격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	3.6cm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의 직인	2.4cm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 직인	2.1cm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 직인	<u>l</u> 2.1cm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직	<u>인</u> 2.1cm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직	<u>인</u> 2.1cm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u>장</u> 2.1cm	

개 정 안

- ② ----- <u>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u> 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
- 제11조(공고) ---- <u>등록, 재등록</u>
- 1. --- <u>등록, 재등록</u> -----
- 2. <u>등록, 재등록</u> ----- <u>사용연</u> <u>월일</u> ----- <u>폐기연월일</u>
- 3. <u>등록, 재등록</u> ----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인의	보관)	
	 <u>간수</u> /	 <u>악가</u>

[별표1] 공인의 규격

	구 분	규격	비고
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	3.6cm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직인	2.4cm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2.1cm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 직인	2.1cm	

현 행								개 정	Ą	<u>}</u>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특수	-공인 :	관리부서				종 류 □ 쳉인 □ 찍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일		년	월	일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인 영)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교 부		새긴 사람	주소 : 성명 : 주민등	록번호	:			- 등록	(인	<u>]</u> 영)	새긴 사람	주소 : 성명 <u>및</u> 생년월		<u>:</u>	
· <u>재</u>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교부공인		재 료						<u>재</u> 등			재 료				
공 인		<u>교부</u> 사유					재 등 록 공 인			<u>등록(재등록)</u> 사 유					
		<u>시보</u> 공고 구보	(제	년	월	일 호)		인			구보 공고		년 <mark>광고</mark>	월 제	일 <u>호</u>
		비고									비고				
		<u>등 록 일</u>		년	월	일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인 영)	폐기일		년	월	일			(인	영)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		폐기사유	마 멸	분 실	7]	타()		ᆌ			폐기 사유	□마멸	□ 분 ·	실 🗌 기	1 타()
케 기 공		폐기방법	소 각	이 관	7]	타()		폐 기 고			폐기 방법	□소각	<u> </u>	관 🗌 기	기타()
인		폐기자	소직성	•				공 인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작 작 작 생			
		시보 공고 <u>구보</u>	(제	년	월	일 호)					구보 공고		년 <mark>광고</mark>	월 제	일 <u>호</u>
		비고									비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 재등록란에 ※ 비고란은 관련문 				<u></u> 에 V3	표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의 <u>교부(재교부)</u> 신청 /	참 조 제 목 공인의 <u>등록(재등록)</u> 신청 /				
공인의 폐기 신고 공 인 명	공인의 폐기 신고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중 대 []청인 []작인 []특수공인				
등록(<u>재교</u> 부, 폐기) 사유	등록(<mark>재등록</mark> , 폐기) 사유				
폐기 예정일 계공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예정일 폐공 (분실일) 년 월 일				
기인 폐기 방법 소각 이관 기타()	기인 폐기 방법 []소각[]이관[]기타() 대처				
소속: 장리 폐기자 직급: 성명:	소속: 정리 폐기자 직급: 성명:				
비고	비고				



의안번호	제 15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오현정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표창업무 추진 도모

3. 주요내용

- 가. 목적규정에 있는 '용어의 약칭'을 다음 조항으로 이관(안 제1조, 제2조)
- 나. 표창, 상장, 감사장(별지 제1호~3호) 서식 개정(안 제8조 제1항)
 - : '주소' → '주소 또는 소속'
- 다. 표창대상자 추천서, 공적심사의결서, 표창수상자명부(별지 제4호~6호) 서식 개정(안 제10조 1항, 제12조 3항, 제15조)
 -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내용 보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나. 입법예고 :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서울특별시 광</u> <u>진구의회</u>
제2조(표창대상) <u>서울특별시 광진구</u>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 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u>서울특별시 광진</u> 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u>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u> -
제4조(표창권자) 이 <u>조례에 의한</u> 표창권자는 <u>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u> <u>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u> 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u>조례에 따른</u> <u>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까지 <u>서식에 의한다</u> . ② 생략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mark>서식에 따른다.</mark> ②(현행과 같음)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생략)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u>서식에</u>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한다.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혅 했 제12조(공적심사) ① ~ ② (생략) 제12조(공적심사) ① ~ 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 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

정 안

[별지 제1~3호 서식]

표창장(상장, 감사장) 서식

← 금박지인쇄 제 호

> 표 창 장 (상장, 감사장)

> > 주 소: 성 명:

(문 아)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 장

은박지부착 → 적색리본 →

[별지 제4호 서식]

표창대상자 추천서

성	码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추천	훈격					
공조	공적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월 일		
추천	[관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표창장(상장, 감사장) 서식

← 금박지인쇄

제 호 표 창 장 (상장, 감사장)

>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문 안)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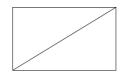
은박지부착 → 적색리본 →

[별지 제4호 서식]

표창대상자 추천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庇		소 속		직 위	
추천	훈격					
공조	공적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관	직위		성 명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의결서	
(천그)	(참구)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업 소속 직위	
추천훈격	추천훈격	
의결주문	의결주문	
이 유	이 유	
년 월 일	년 월 일	
광진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광진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표창수상자명부	[별지 제6호 서식] 표창수상자명부	
표창 발급 일자 소 속 직 위 성명 주민등록 비고 구분 번호 일자 (주 소) (직업)	표창 발급 구분 번호 일자 (주 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비고
7 2 2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TE CE (TE)	



의안번호	제 16호
의 결	2016. 2. 26.
년 월 일	(제246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 성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으로써, 금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융자금의 금리를 연 2.3%로 고정된 수치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 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2. ~ 2. 22.)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융자금의 금리는 연 2.3%로 한다."를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제3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2.3%로	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
<u>한다.</u>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	<u>한다.</u>
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